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우리군 특성과 군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2)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 3)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군의회를 비롯한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검토결과,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향상된 품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